

2025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I.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2849호, **2025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5년 5월 26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

II.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

1. 제안이유

- 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여유자금 예치금이 증가함에 따라 2025년 수입·지출계획이 변경됨
- 나. 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2024년 결산에 따라 「예치금」이 당초 3,367백만원에서 7,410백만원으로 4,043백만원 증가하여, 2025 회계연도 수입계획상 「예치금 회수」금액 또한 4,043백만원 증가하였음

- 증가사유 :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3,955백만원), 이자수입(39백만원) 및 융자금 원금수입 (37백만원) 증가, 기본경비 집행잔액 (12백만원)

나. 예치금 증액에 따라 추가적인 예탁금원금 회수 불필요하여 「예탁금원금 회수」 금액 2,000백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음. 이에, 지출계획상 「여유자금 예치」 금액이 당초 188백만원에서 2,230백만원으로 2,043백만원 증액(1087.9%)되었음

[2025년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장·관·항		당초 (A)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B)	증감 (C=B-A)	증감률 (D=C/A)
총 계		7,603	9,645	2,043	26.9
세 외 수 입		159	159	-	-
	경 상 적 세 외 수 입	159	159	-	-
	이 자 수 입	159	159	-	-
보 전 수 입 등 및 내 부 거 래		7,444	9,487	4,043	54.3
	보 전 수 입 등	4,844	8,886	4,043	83.5
	융 자 금 원 금 수 입	1,477	1,477	-	-
	예 치 금 회 수	3,367	7,410	4,043	120.1
	내 부 거 래	2,600	600	△2,000	△76.9
	예 탁 금 원 금 회 수	2,000	-	△2,000	△100
	예 탁 금 이 자 수 입	600	600	-	-

[2025년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당초 (A)	기금운용계 획변경안 (B)	증감 (C=B-A)	증감률 (D=C/A)
총 계		7,603	9,645	2,043	26.9
장 애 인 복 지 증 진 사 업 지 원		7,400	7,400	-	-
	장 애 인 단 체 및 사 업 지 원 (사 회 복 지 기 금 장 애 인 복 지 계 정)	7,400	7,400	-	-
	장 애 인 전 세 주 택 지 원 사 업	7,400	7,400	-	-
일 반 예 산 (재 무 활 동)		188	2,230	2,043	1087.9
	보 전 지 출 (사 회 복 지 기 금 장 애 인 복 지 계 정)	188	2,230	2,043	1087.9
	여 유 자 금 예 치 (사 회 복 지 기 금 장 애 인 복 지 계 정)	188	2,230	2,043	1087.9
기 타		15	15	-	-
	행정운영경비(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15	15	-	-
	기금관리비(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15	15	-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Ⅲ. 검토의견¹⁾

- 서울특별시는 지난 1999년,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지원하고자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을 운용하고 있음
-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4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수입계획중 ① **예치금회수**가 증가(40억 4,300만원)함에 따라 수입계획중 ①**예치금회수** 증가분(40억 4,300만원)과 ②**예탁금원금회수** 감액분(△20억원)의 차액(20억 4,300만원)을 수입계획과 연동된 지출계획에도 정책사업인 **일반예산(재무활동)**에 20억 4,300만원을 증액하여 예치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²⁾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지출계획의 정책사업인 **일반예산(재무활동)**은 당초 1억 8,700만원을 지출계획 하였으나, 당초 지출계획보다 1,092.5%, 20억 4,300만원을 증액하여 지출계획하려는 것이기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
- 동 계정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은 '24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자금을 예치금으로 적립하고, 여유자금 발생규모를 고려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맡겨둔 자원(예탁금원금회수)을 당초 계획보다 감액하여 회수하는 것으로 수입계획함에 따라 지출계획에도 수입계획의 ①**예치금회수**와 ②**예탁금원금회수** 사이의 차액분(20억 4,300만원)을 지출계획에 반영하고자 사회복지기금(장

1) 검토보고서의 경우,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함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애인복지계정)에 대한 수·지 운용계획에 대한 변경을 요청한 것임

- 아울러 동 계정에 대한 운용계획변경안은 동 기금의 설치근거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에 명시된 동 계정의 용도³⁾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3)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9조(장애인복지계정)

① (생략)

②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2. 장애인단체의 지도·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
3. 장애인 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4. 장애인 관련 학술대회 등 행사 지원
5.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
6. 저소득 장애인의 자활 지원
7.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8. 장애인의 교육 및 직업훈련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